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10490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50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104908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주식회사

6.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7. G

8. 주식회사 H

9.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김정화, 전상미, 이정애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세리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변론 종결 2018. 11. 28.

판결 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9,388,704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 사이의 2017. 6.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6. 27. 접수

제795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나.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의 2017.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3. 접수

제82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의 2017.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3. 접수

제82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라.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2017.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3. 접수 제83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마.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G 사이의 2017.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하고,
- 2) 피고 G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2017. 7. 4. 접수 제836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바.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2017.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H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4. 접수 제838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사.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의 2017.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I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4. 접수 제839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아.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J 사이의 2017.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J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5. 접수 제840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자.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의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K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5. 접수 제840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차.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의 2017.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L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6. 접수 제85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카.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M 사이의 2017.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M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6. 접수 제850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C에게, C이 구매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보험기간 2016. 2. 23.부터 2017. 2. 22.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액 890,000,000원,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그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매출채권액 279,000,000원, 구매자보험금액 57,000,000원)으로 정하여 발급해주었다.

나. 이후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A이 C에게 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보험증권에 기하여 원고는 2017. 8. 2. C에게 보험금 5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대지급금으로 327,335원을 지출하였다. 2018. 3. 9. 현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59,388,704원(= 57,000,000원 + 327,335원+ 확정지연손해금 2,061,369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B	2017. 6. 27.	2017. 6. 27.	300,000,000
2	C, 주식회사 D	2017. 6. 29.	2017. 7. 3.	323,288,900
3	E 주식회사	2017. 7. 3.	2017. 7. 3.	208,580,000
4	주식회사 F	2017. 7. 3.	2017. 7. 3.	205,268,300
5	G	2017. 7. 4.	2017. 7. 4.	10,890,000
6	주식회사 H	2017. 7. 3.	2017. 7. 4.	91,714,718
7	주식회사 I	2017. 7. 4.	2017. 7. 4.	382,649,100

1	B	2017. 6. 27.	2017. 6. 27.	300,000,000
8	주식회사 J	2017. 7. 4.	2017. 7. 5.	363,496,187
9	주식회사 K	2017. 7. 5.	2017. 7. 5.	420,000,000
10	주식회사 L	2017. 7. 6.	2017. 7. 6.	52,000,000
11	주식회사 M	2017. 7. 6.	2017. 7. 6.	59,000,000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7. 14.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 10012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피고에 대한 재산상황 조사결과 2017. 8. 10. 당시 위 피고의 총 자산은 23,496,507,000원, 총 부채는 36,964,550,000원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M: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구상금 59,388,704원 및 그 중 원금 5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10.부터 2018.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A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불과 약 한달 뒤 원고가 위 매출채권보험증권에 따라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전에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집행을 마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무자력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에 앞서 피고 주식회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수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②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피고 주식회사 A와 거래관계에 있는 위 피고들에게 열흘 남짓한 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정되었으며, ③위 각 근저당권 설정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고 주식회사 A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을다 제1 내지 8호증, 을바 제1 내지 7호증, 을아 제1호증, 을자 제1 내지 5호증, 을카 제7호증, 을타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익

별지